

예산총칙

200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5,252,753	13,057,583
일반회계	429,339,407	12,880,182
특별회계	5,913,346	177,400
기타특별회계	5,913,346	177,400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833,778	115,013
주택사업특별회계	240,910	7,227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829,834	24,895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80,545	8,416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54,232	16,627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174,047	5,221

제 2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4 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23,290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